

# 경산시와 대구대학교간의 관·학 교류 협정서

경산시와 대구대학교는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양 기관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관·학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물론 상호발전에도 유익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경산시와 대구대학교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내용) 경산시와 대구대학교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1. 대구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교원)을 경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다.
2. 대구대학교는 경산시 공무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지원한다.
3. 경산시와 대구대학교는 체육분야발전에 상호 협력한다.
4. 대구대학교는 경산시를 비롯한 시민·기관·단체 등이 학교의 시설물 이용을 요청할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5. 대구대학교는 경산시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구매에 협조한다.
6. 경산시는 대구대학교가 추진하는 교육·시설관련 사업에 자문과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7. 경산시는 대구대학교와 관내 산업체간의 산학협동분야 추진에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 협력한다.

8. 경산시와 대구대학교는 학술회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기타 행정정보의 교환에 상호 협력한다.

9. 경산시와 대구대학교는 공동 관심분야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안에 대하여 긴밀히 상호 협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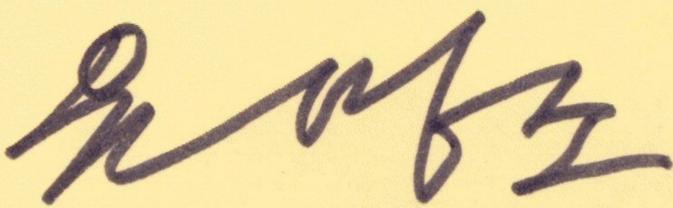
제3조(관·학 운영위원회 구성) 제2조의 협정사항 실현을 위하여 필요시 양 기관의 관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4조(신의 성실의 원칙) 본 협정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대표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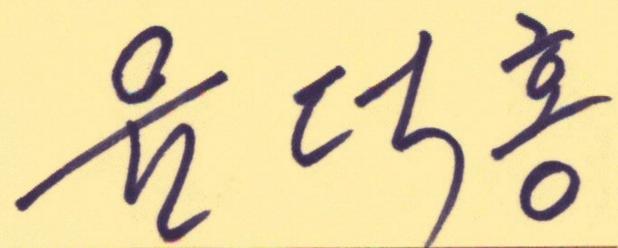
제5조(협정서의 효력) 1. 이 협정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이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2002. 12. 4.



경 산 시 장  
운 영 조



대구대학교총장  
윤 덕 홍